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곽영학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9년 1월 6일

○ 회부일자 : 2019년 1월 7일

3. 제안이유

○ 상위법령(대통령령)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
4. 주요내용

○ 연가가산 유사경력 적용 대상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(안 제14조)

○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제16조, 제17조 삭제

○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(안 제18조제1항, 제12항)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4조에서는 연가가산 유사경력 적용 대상을 경력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을 「지방공무원

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 제2호로
일원화 하는 것과

-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제16조, 제17조를 삭제하는 것,
- 시행령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개정하는 것임.

○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개정을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